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조문 상 띄어쓰기 오류 등을 교정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성실납세자 등”으로 통일

(제명 변경, 안 제3조~제5조)

나. 성실납세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유예”로 변경

(안 제5조제2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및 제8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호”를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3조의제1호”를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실납세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면제”를 “유예”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을 “표창”으로 한다.

제7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지방세 성실납세 자</u>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 ----- ----- <u>성실납세자</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자 선정) <u>성실납세자는</u> <u>다음 각호의</u> 기준에 따라 선정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u>성실납세자</u> <u>등은 다음 각 호</u> ----- ---.
1. <u>제3조의제1호</u> 및 제2호의 경 우에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 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1. <u>제3조제1호</u> ----- -----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u>성 실납세자</u> 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u>각 호</u> 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 다.	제5조(지원 등) ----- <u>성 실납세자 등</u> ----- ----- <u>각 호</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 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u>각목</u>	2. ----- ----- <u>각</u>

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u>면제</u> 나.·다. (생략)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u>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u> 및 격려 마. (생략)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목</u>----- --. 가. ----- - <u>유예</u>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 <u>표창</u> ----- ----- 마. (현행과 같음) 제7조(시행규칙) ----- --- <u>필요</u>----- -----.
---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19. 12. 31.>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

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2019. 12. 3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소관 실·과		세 정 과
입 안 자	과 장	변 동 석
	담 당	장 인 수
	담 당 자	민 은 심 (480-6852)